2016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승인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 ○ 2016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 제18조」가 개정됨에 따라 「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맞춰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2. 주요내용
 ○ 2016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: 30백만원
 •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현황
 - 도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환경부 지원 환경전문연구소
 - 센터장 : 이순화 영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
 - 위 치 :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(영남대학교내)
 - 주요역할 : 환경정책 연구,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
 기업 환경컨설팅 지원 , 환경신기술 개발 등
 • 출연에 따른 혜택
 - 우리군 환경 현안 우선적으로 연구과제로 채택
 ▸연구는 보조금 지원금액과 상관없이 수행
 ▸부족분은 환경부, 도 지원금으로 충당
 ▸연구수행시 대부분 지원금(30백만원) 보다 더 많은 연구비 소요
 - 기업체 기술지원, 무상 시설개선자금 지원
 • 기대효과
 - 지역 특유의 환경오염 현상에 대한 조사·연구 사업을 통하여 환경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
 - 연구 자료를 군 추진 정책 및 사업에 적용·반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기초 마련
3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,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0조제2항
 나. 예산조치 : 2016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예산 편성(30백만원)
 다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

1. 입법내용

○ 지자체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 근거가 개별 법령에 명확히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의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

○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현행 환경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 반영

< 개정안의 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) ① (생 략)	제10조(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, 환경부장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	②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.

2. 추진일정

○ 입안, 관계 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: '15.1~2

○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처 제출 : '15.4~6

○ 국회제출 : '15.8

○ 향후일정 : 국회통과 및 공포('15.12 예정), 시행(16.1 예정)